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08시 30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허가의 취소 등	3

## 허가의 취소 등

2014.04.17 조회수 652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59
담당부서	공원과
상위법령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조례	여수시 도시공원등 관리 조례 제12조
유형	1호 - 허가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신설규제
존속기한	2012-08-10
규제시행/폐지일	2012-08-10
규제내용	제12조(허가의 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 1.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.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55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60

# Yeosu Web Contents

